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54
----------	-------

발의연월일 : 2025. 12. 10.

발 의 자 : 문대림 · 윤준병 · 위성곤

문금주 · 이언주 · 임호선

안호영 · 이학영 · 이병진

박홍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낙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그 낙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으로 하되, 연접한 시·도 간 구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하위법령에서는 낙시어선업자가 낙시인을 낙시어선에 승선시켜 낙시터로 안내할 뿐 그 어선에서 낙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그 낙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관할 구역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도 관할 구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낙시어선업의 영업을 낙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낙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해당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연결한 시·도의 낚시어선업자가 제주시 추자도에 무분별하게 낚시인을 하선시켜 쓰레기 투기, 원거리 운항에 따른 사고 위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낚시어선업의 영업범위에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연결하거나, 공동영업구역과 연결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은 포함하지 아니함을 규정함으로써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구역은 낙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또는 공동영업구역과 연결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5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제3호의3 및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한 낙시어선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영업구역) ① (생략)	제27조(영업구역)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② 제1항에 따른 영업구역은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또는 공동영업구역과 연결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시·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영해 바깥쪽 해역을 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 ----- ----- -----.
제55조(과태료) ① (생략)	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3의2.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한 낚시어선업자</u>
<u>3의2. · 3의3.</u> (생략)	<u>3의3. · 3의4.</u> (현행 제3호의2

4. ~ 8. (생략) ③ (생략)	및 제3호의3과 같음) 4.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